

동서의학대학원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내규

시행 : 2021. 06. 0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교육부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동서의학대학원 내규」(이하 “본 대학원 내규”라 한다)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동서의학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내에 설치하는 학과이며 다음 각호의 경우로 구분한다.

1.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 조건형)
 2.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 ② 본 대학원은 계약학과를 ‘미래식품학과’로 본다

제2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제3조(계약학과 설치 권역)

- ① 본 대학원과 산업체 등이 산학협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 이내(직선거리기준)인 경우로 한다. 다만,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대학원과 동일한 ‘권역’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함을 명시한 경우 ‘권역’ 내의 계약으로 본다.
- ② 산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자의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제4조(운영계약) 계약학과의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이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 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설치학과) 계약학과는 본 대학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이후 “모체 학과”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다.

제7조(설치장소) 계약학과는 교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모체학과(전공)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 및 교육부장관에게 이동수업 승인을 얻어 이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학과 및 학생정원) ① 모집학과는 동서의학대학원 일반전형의 학과를 모체학과로 한다.

② 학생정원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경우 해당 학년의 전체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정원(총정원제)의 100분의 20이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해당학년도 입학정원(총정원제)의 100분의 50까지 모집정원 확대는 산업체 인력수요의 시급성·중요성,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다.

제3장 입학 및 학사 관리

제9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본 내규 제2조 제1항 제2호의 계약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학칙」, 「동서의학대학원 내규」의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학일 기준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국고사업관련 개설학과의 경우 산업체 근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관련 운영지침에 따른다.

③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자는 일반지원 서류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체 등의 추천서

2. 재직증명서

3. 4대보험 가입증명서

4. 회사지원 확인서

5.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청징수부로 대체 가능)

6. 기타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매 학기 개시 전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학과의 입학 또는 편입학 선발절차는 본교의 학칙과 본대학원 내규를 따른다.

제10조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교육과정의 운영) ①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본 대학원 일반학과의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편성·운영 하며, 계약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에서는 세부트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업) 수업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13조(학위수여) 계약학과의 학위 수여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및 요건은 본 대학원 내규의 일반학과 기준을 따른다.

제14조(휴학) 계약학과 학생은 휴학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이 타지역으로 전보되는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산업체의 승인 후 휴학할 수 있다.

제15조(전과) ① 계약학과 간 또는 정원내 일반학과로의 전과는 불허한다.

제16조(기타 학사운영) 기타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 내규 및 각 학과의 교육과정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장 계약학과의 운영

- 제17조(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과설치, 폐지, 정원조정, 교육과정, 회계관리 등을 심의·조정한다.
③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학생대표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국고사업관련 학과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운영지침에 따라 별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계약학과 운영) 계약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 제19조(운영경비 및 등록금) ①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②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시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하되,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계약학과의 회계관리는 교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모체학과)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해당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1.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2. 계약학과 재학 중 휴학 후 복학하였으나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폐지된 경우
 3.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당해 계약학과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 중에 있는 경우
- ② 상기 제1항에 해당하는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50% 이상을 산업체 등에서 부담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 1인의 교육에 필요한 필요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③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 ④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사업장 이전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 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 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제21조(자체점검결과보고) 계약학과의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산업체등의 현황은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2조(준용규정)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본 대학원 내규를 준용하며, 국고 지원사업 관련학과는 해당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06월 09일부로 시행한다.